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3호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예고

#### 1.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0조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대한 공개경쟁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대행자의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대행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대행자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대행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아. 대행자의 기간만료 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32,

FAX 042-600-5049, E-mail : heosc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자의 지정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운영능력을 평가하여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 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지정대상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은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기간만료 후의 업무)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 하는 경우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①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에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